

3 공장심사 평가항목

1. 품질경영: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관리 평가항목(1.1 ~ 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적합 여부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고 • 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1.2 [★ 핵심품질] 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고: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KS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고 • 자체 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연 1회 이상) •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 등을 포함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 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고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품질관리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1.5 제안활동 또는 소집단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고: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2. 자재관리: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 여부	
2.1 [★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 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KS를 활용하여 KS인증 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규정 내용에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고 •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 의뢰를 할 경우, 시험 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 자재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고 외부의 시험성적서 등의 확인으로 대체할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하였다면 적합(예)으로 평가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 여부(시험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설비 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2.5 자재인수검사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일정 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 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 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3. 공정·제조설비관리: 일반품질(6항목), 핵심품질(2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 여부	
3.1 [★ 핵심품질] 공정별 관리항목과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을 KS에 따라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공정 및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관리항목별 관리사항과 중간검사 항목별 검사방법이 사내표준에 규정되어야 함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와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KS에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 • 가공·조립 등 최종 공정은 자체 수행하여야 함(단, 포장·표시·검사는 최종 공정에 해당하지 않음)		
3.2 공정별 관리항목과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한다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3.3 주요공정(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사내표준에 규정한 주요공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주요공정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은 적합(예)으로 평가		
3.4 [★ 핵심품질] 공정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	예	아니요

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비교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 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 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3.5 부적합품은 적절한 식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유형별 부적합 건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제조설비: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한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방보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소모품, 교체부품 및 윤활유 등의 선택기준, 사용량, 교체주기, 폐품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 -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지그 및 부품 등의 마모도, 필터류의 교체주기별 이행 기록 등을 포함한 예방보전 활동을 평가 - 관리사항을 설비관리규정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 여부	
4.1 제품의 설계요건,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 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 등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품 설계요건을 정의하여야 한다. - 기능 및 성능/성과 요구사항(제품의 도면, 적용되는 주요 부품, 제작 후 예상되는 기대성능 및 구현 기능 등) - 법 및 규제 요구사항 - 품질 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 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4.2 [★ 핵심품질] 로트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	예	아니요

하고 있으며,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와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비교 - 로트품질보증규정: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등 - 공인시험·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4.3 검사 후 합격·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4.4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 여부(시료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설비 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4.5 [★ 핵심품질]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인증심사 3개월, 정기심사 12개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심사 45일 -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 현장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데이터 분석(일정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5. 시험·검사설비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해당 외부설비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 여부	
5.1 [★ 핵심품질] 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품질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시험·검사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 - 외부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 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 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5.2 시험·검사설비의 설치 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험·검사설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5.3 시험·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 결과를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 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6.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일반품질(3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 여부	
6.1 [★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KS Q ISO 10002(품질경영 — 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 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 일시, 판매 장소 등을 확인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구매 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KS A ISO/IEC Guide 14(제품 및 관련 서비스 — 소비자를 위한 정보) 및 KS C IEC 82079-1[제품의 사용 정보(사용 설명) 작성 — 제1부: 원칙과 일반 요건]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제품의 사용설명서 또는 시공방법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KS별 인증심사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보건·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안전·보건: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작업장 환경관리(대상·범위·기준·주기·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담당자가 정기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고 생산·품질경영 관련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KS Q ISO 10015(품질경영 — 교육훈련 지침)를 토대로 규정 - 계획: 연간 계층별·분야별(자재·공정, 제품품질, 설비관리, 제품생산기술 등) 실시: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 이수, 경영간부의 30 % 이상 교육 이수 및 미이수 경영간부에 전파 교육 완료 시 적합(예)으로 평가		
6.5 [★ 핵심품질]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 비교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및 직무에 필요한 지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및 시행규칙 별표 8) (인증심사)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합으로 평가 (정기심사) 품질관리담당자의 퇴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인증업체가 인증기관에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 기한 내에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합으로 평가 - 품질관리담당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품질관리담당자 정보(성명, 자격 번호, 자격 취득일, 근무기간 등)는 공장심사보고서에 기재		